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63
----------	-------

발의연월일 : 2026. 5. 14.

발 의 자 : 조지연 · 김은혜 · 김승수
이달희 · 김위상 · 임이자
김용태 · 김상훈 · 김대식
최보윤 · 서일준 · 김장겸
한지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살생물제 제품을 국내에 판매·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승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승인신청을 하여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승인을 위한 평가가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종료일부턴 해당 물질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

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평가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13조 및 제21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를 “신청,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이 면제되는 자료 등에”로 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을 신청받고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전단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를 “신청,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이 면제되는 자료 등에”로 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제품승인을 신청받고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

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은 전단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품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 ③ (생략) <u><신설></u></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및 자료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을 신청받고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전단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u></p> <p>⑤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신청,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이 면제되는 자료 등에----- -----.</u></p> <p>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제품승인을 신청받고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 제</u></p>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은 전단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신청,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이 면제되는 자료 등에-----
-----.